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산학지원과), 02-970-9147

제정 2015. 9. 8.

개정 2017. 2. 28.

개정 2019. 5. 22.

전부개정 2021. 3. 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발명진흥법」과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과 그 밖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직무발명을 보호·장려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지식재산권"이란 산업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), 저작권(저작인접권 포함), 신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등 관련 법률에서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말한다.
- 2. "교직원"이란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·직원·조교와 그 밖의 「서울과학 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」에 따른 교원 등을 말한다.
- 3. "교직원등"이란 제2호의 교직원과 그 밖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- 4. "직무발명"이란 교직원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서울과학

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, 그 발명을 하게 된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,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 (이하 "산학협력단"이라 한다) 및 정부부처 또는 그 출연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특정연구 과제를 수행한 결과 산출된 발명, 법률 그 밖의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하게 된 발명,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따라 대학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한 결과 창작하게 된 발명을 말한다.

- 5. "자유발명"이란 제3호의 직무발명 이외의 발명과 직무발명 중 산학협력단이 승계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한 발명을 말한다.
- 6. "발명자" 란 직무발명을 창작한 교직원등과 그 창작에 기여한 연구자 등을 말한다.
- 7. "기술이전" 이란 지식재산권의 양도·실시권 허여·기술지도·자문 등의 방법으로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.
- 8. "기술사업화" 란 본교가 직·간접적으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양산화하고 생산·판매 또는 그 과정에서 관련 기술을 개량·향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.
- 9. "실시"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물건의 발명인 경우는 그 물건을 생산·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(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하는 행위
 - 나. 방법의 발명인 경우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 - 다.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는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으로 생산 한 물건을 사용·양도·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

을 하는 행위

- 10. "기술료" 란 지식재산권 등이 기술사업화 되어 발생하는 수익금을 말한다.
- 11. "발명자 보상금" 이란 수입된 기술료 중 기술을 개발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를 말한다.
- 12. "기여자 보상금" 이란 기술이전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기술이전을 중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술료로 기여자는 발명자의 추천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이 지정한다.
- 13. "발명심의제도" 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신고된 교직원 등의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기술조사, 발명컨설팅, 발명의 평가 등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교직원등의 지식재산권 취득·처분·관리·보상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연구과제의 경우 정부(공기업 출연 포함)의 관계 법령 등으로 따로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다.
- 제4조(관리부서) 교직원등의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.
- 제5조(권리의 승계)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며,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교직원등의 지식재산권은 본교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교직원등의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교직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.
- 제6조(발명의 신고) 교직원등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직무발명신고서 (별지 제1호 서식)
 - 2. 양도증 (별지 제2호 서식)

- 3. 발명의 내용설명서 (별지 제3호 서식)
- 4. 친인척 참여 신고서 (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친인척 관계자에 한함, 별지 제5호 서식)
- 제7조(승계의 결정 및 통지) ① 산학협력단장은 제5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도의 통지 없이 그 권리를 승계한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권리를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다.
- 제8조(자유발명의 신고 및 권리 숭계) ① 자유발명자가 발명에 대한 권리를 본교에 양도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라 발명신고를 하여야 하며, 신고 된 자유발명에 대하여는 직무발명 관련 사항을 준용한다.
 - 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직원등이 양도하고자 하는 자유발명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며, 승계하지 않을 경우 즉시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9조(발명자의 특허출원 제한) 발명자는 산학협력단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개인명의로 특허출원을 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- 제10조(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 등) ① 산학협력단은 제7조에 따라 권리 승계를 결정한 발명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권 출원을 하고,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학 기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11조(위원회 설치) ① 산학협력단에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심의위원회를 둔다.

- ② 특허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시 특허심의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 이 때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과 학기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에서 별도로 정한다.
- 제12조(위원회의 구성) ① 특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특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.
 - ③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④ 특허심의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위원장이 산학협력단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.
 - ⑤ 간사는 회의록 작성 등 특허심의위원회의 사무업무를 담당한다.
- 제13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특허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장 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 - ③ 위원장은 해당 분야 및 관련 유사분야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수 있다.
- 제14조(위원회의 기능) 특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- 1. 소관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 - 2. 지식재산권 관리·운영 및 기술사업화 추진 업무에 관한 사항
 - 3. 산하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특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부의할 수 있다.
- 제16조(사전협의) 본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보유기술에 대하여 제3 자(이하 "실시자"라 한다)로부터 사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을 경우, 해당 기술의 연구·개발책임자(이하 "연구책임자"라 한다)는 실시자와 기술수준, 기술 개발단계, 제품의 시장성 및 경제성, 활용의 난이성, 기술이전 및 훈련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적정 기술료 수준과 실시기간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.
- 제17조(계약의뢰) 연구책임자는 실시예정자 및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팀과 사전 협의후, 사전협의결과 및 이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4호 서식의 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- 제18조(계약체결) 산학협력단장은 제17조의 기술실시계약 체결의뢰서를 기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, 계약체결 내용을 특허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9조(보상금)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양도,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 권의 허락으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보상금 및 기여자 보상금을 지급하 며, 분배 기준은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20조(보상금 지급기간) ①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정년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.
 -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정년퇴직 후 사망할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승계하다.
- 제21조(보상금의 반환)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지급 받은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특허가 모인(冒認)에 따라 무효로 된
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- 제22조(발명자의 의무)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, 심사, 심판 및 소송 그 밖에 처분 또는 실시를 위하여 본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.
- 제23조(비밀의 유지)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허 출원시까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.
- 제24조(그 밖에 지식재산권) 이 규정은 실용신안, 의장권, 그 밖에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- 제2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칙<제293호, 2015. 9. 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「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직무발명 규정」 및 「서울과학기술 대학교 기술이전 및 기술료 관리 규정」은 폐지한다.

부칙<제362호, 2017. 2. 28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473호, 2019. 5. 2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<제594호, 2021. 3. 2.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직무발명신고서(□일반/□심화)

발명의 명칭	국문 : 영문 :					
		성 명	전화번호	소속 / 학과명	지분(%)	친인척관계여부
	한글 : 영문 :					
발명자	한글 : 영문 :					
	한글 : 영문 :					
회관성구회계	ę	[구과제명	연구기간	연구개발비	부처	및 전담기관
관련연구과제						
지재권 종류	□ 특허	□ 실용신안 □ 성	}표 □ 디자인	□ S/W □ 저작권	[기타	-()
출원희망국	□ 국내 □ 미국 □ 일본 □ 중국 □ 유럽 □ PCT □ 기타 국가 ()					
출원목적	□ 과제 실적 □ 권리확보 □ 기술이전 □ 창업 □ 기타()					
특허비용	□ 과제연구비 □ 산학협력단 □ 기타(<i>※기업부담, 개인부담 등 기제</i>)					
공동출원 여부	□ 단독출원 ※ 공동출원일 경우, 산학협력단 지분 (%) □ 공동출원 공동출원인(기관) 명칭: ()					
발명의 공개여부 및 계획	□ 논문발표 □ 학술지게재 □ 연구보고서 □ 기타 (※발표일 : 년 월 일) [※첨부 : 발표내용(발표일, 학술지명 등) 사본]					
기술 완성도	□ 아이디어단계 □ 기술개발단계 □ 기술개발완료단계 □ 시제품단계 □ 상용화단계					
	6T분류 □ BT □ CT □ ET □ IT □ NT □ ST □ 기타					
기술분야	과학기술 표준분류 □ 전기·전자 □ 정보 □통신 □ 농림·수산 □보건·의료 □환경 □에너지·자원 □원자력 □건설·교통 □우주·항공·천문·해양 □기술혁신·과학기술정책					
	적용분야 ex) 디스플레이, 배터리, LED ※ 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제품 최소 5개 이상 표기					
전담특허사무소 []						
상기의 직무발명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오니 승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
년 월 일						
서오고하기스	네하고 사	하혀려다자 긔ᅱ	신고	<u>'</u> ^r	(인)	
	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발명자중 주 담당자 성명 및 E-mail 주소 :					
已 0/10 日 0/1 0 0 大 L IIIQII 上 ·						

※ 작성 요령(제출 시 삭제할 것)

- 1. 일반과 심화를 선택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
 - (일반 : B등급으로 자동승계되어 청구항 5항이내 출원 / 심화 : 심화인터뷰를 거쳐 S, A등급 결정)
- 2. 발명자(들)와 지분배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여 주십시오.
- 3. 발명자(들) 중 친인척이 참여함을 반드시 신고하여 주십시오.

[별지 제2호 서식]

		양	도 .	증		
발명의	명칭					
출 원	번 호	* 출원 전 번호기입 불가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지분율	%
	주 소	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지분율	%
	주 소	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지분율	%
양 도 인	주 소					
8 I U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지분율	%
_	주 소	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지분율	%
	주 소					
	성 명	(인)	주민등록번호		지분율	%
	주 소					
양 수 인	성 명	서울과학기술대학:	교 산학협력단			
0 T U	주 소	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32				

위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(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 등 포함)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도합니다.

년 월 일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

- ※ 양도인 칸에는 모든 발명자의 자필 서명 기재
- ※ 직무발명 승계심의 후 출원 절차가 중단될 경우 반환

발명의 내용 설명서

1. 개요

- 가. 기술 분야 (산업상 이용분야)
- 나. 기술 배경 (경쟁기술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)

2. 발명의 상세한 내용

- 가.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(발명의 목적)
 -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, 내용
- 나. 발명의 구성 및 작용 (필요시 도면 첨부)
- 다. 종래 기술과의 차이점, 독창성(신규성), 실현(산업적용), 용이성

3. 발명의 파급 효과

- 가. 본 발명에 의해 얻어지는 효과
 - 해당 기술 분야 및 응용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
- 나. 향후 추진 방향
 - 기술의 발전 가능성, 추가개발/보완계획
- 4. 시장성 및 사업성 정보 (이하 해당 정보의 근거가 미약한 경우 생략 가능)
 - 가. 현재/미래의 산업규모 및 근거
 - 나. 경쟁기술 및 기술 수요자 정보 (제품 사업화 기업)

기술실시계약체결의뢰서

신청일: 년 월 일

신 청 인 : (인)

결	담당	팀장	과장	단장
재				

다음과 같이 기술실시 계약체결을 의뢰하오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. 계약체결 대상 기술명 :
- 2. 관련연구 현황

연구과제명	연구책임자	연구기간	연구비 (천원)	기여율 (%)

- 3. 실시자 :
- 4. 실시자 와의 협의내용 :

※ 첨부 : 기술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.

친인척 참여 신고서

■ 발명 정보

발명의 명칭		
지재권 종류	□ 특허 □ 실용신안 □ 상표 □ 디자인 □ S/W □ 저작권 □ 기타()
출 원 목 적	□ 과제 실적 □ 권리확보 □ 기술이전 □ 창업 □ 기타 ()

■ 친인척 참여 현황

성 명	생년월일	
본인과의 관계	지분(%)	
주 소		

위와 같이 본인의 친인척이 해당 발명에 참여하였음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발 명 자 : (서명/인)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